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이호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이호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1
----------	-----

발의연월일 : 2025년 9월 25일  
발의자 : 강수진, 경수현,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전자회의록의  
공개 기한 규정 및 전자임시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  
하고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 나. 전자회의록 공표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여 신설(안 제6조)
- 라. 신설된 조항에 맞추어 기존 조문의 순서 등을 조정
- 마.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 2025. 9. 30. ~ 2025. 10. 4.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의 작성, 발간, 배부, 보존, 열람, 복  
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록의 구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책자회의록

가. 보존회의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  
라 한다)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

나. 비공개회의록: 의회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회의규칙 제4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의 내용을 게재한 회  
의록

### 2. 전자회의록

가. 전자임시회의록: 회의 내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전자회의록 공표 전  
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회의록

나. 전자회의록: 회의규칙 제4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홈페이지  
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표하는 회의록

제3조(회의록의 작성) ① 본회의,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의회 본회의 회의록 작성은 회의규칙 제41조를, 위원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는 회의규칙 제57조를 준용한다.

③ 회의록에 기재하는 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또는 발언한 의원(이하 “발언의원”이라 한다)이 회의록 내용을 불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한 의원과 협의하여 전자임시회의록과 전자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보존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열람 등) ① 보존회의록은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전자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하여 영구보존한다.

②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보존회의록을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전자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이 게재된 보존회의록의 열람 또는 복사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의회 밖으로 대출하지 못한다.

제5조(비공개회의록의 보존·열람) ① 비공개회의록은 원고로서 보관한다.

②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

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의회 밖으로 대출하지 못한다.

제6조(전자회의록 공표) ① 전자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가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전자임시회의록에 게재한 후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게재를 보류하거나 게재된 회의록을 삭제할 수 있다.

③ 전자회의록은 전자임시회의록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각 회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전자회의록이 게시되었을 경우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이 의원에게 배부되고 일반에게 공개한 것으로 본다.

제7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의장 또는 위원장(이하 “의장 등”이라 한다)이 의원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은 발언내용을 완결짓는 간단명료한 것으로써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8조(참고문서 등의 게재) ① 의원이 참고문서 또는 발언보충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 등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은 회의 또는 발언과 관계 있는 간단한 사항이어야 한다.

② 의원으로부터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제14호 및 제5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타 사항의 게재 요구가 있어 이를 의장이 허가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에 게재한다.

제9조(자구의 정정) ① 발언의원 · 공무원 및 기타 발언자(이하 "발언자"라 한다)가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른 자구의 정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구 정정은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법조문 및 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하는 경우
3.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4.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③ 자구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회의록과 보존회의록을 정정하여 게재한다.

제10조(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① 의원 또는 발언자가 회의록 원고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회 및 성북구청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회의록 원고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과장이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 또는 복사의 범위는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 원고에 한하며 의장은 회의규칙 제44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이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의 단서에 규정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원고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비공개회의록 원고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

한다.

제11조(녹음) ① 회의록 작성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녹음을 할 수 있다.

② 속기 원고와 녹음파일 등은 전자회의록이 공표된 후 폐기한다.

제12조(자료제출) 본회의(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회의록을 작성하는 회의)시 제9조 및 제10조에서 의장이 허가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자료 및 제3조제3항의 자료 등 서면자료는 의회 안건담당자에게 제출하되 그 내용이 수록된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이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회의록 중 불게재 신청서 (제3조제4항 관련)

## 성북구의회 의장 귀하

제 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위원회) 회의록 내용 중 별도 표시 부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신청인

붙임 (불게재 요청부분을 별도 표시한) 회의(속기)록 사본 1부.

### [별지 제2호 서식]

## 보존회의록 열람·복사 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

성북구의회 의장 귀하

제 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위원회) 호  
보존회의록 중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열람·복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①

열람·복사를 허가받은 의원은 회의 규칙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 비공개회의록 열람 신청서 (제5조제2항 관련)

## 성북구의회 의장 귀하

제 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위원회) 호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별지 제4호 서식]

참고문서 게재 신청서  
(제8조제1항 관련)

성북구의회 의장 귀하

제 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위원회) 호  
회의록에 아래와 같이 참고문서를 게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서 게재 요구사항

20 년 월 일

신청인 ①

[별지 제5호 서식]

## 자구 정정 요구서 (제9조제1항 관련)

## 성북구의회 의장 귀하

제 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위원회) 회의록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자구 정정을 요구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별지 제6호 서식]

## 회의록원고 열람·복사 신청서 (제10조제1항 관련)

## 성북구의회 의장 귀하

제 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위원회) 회의록의 원고를 아래와 같이 열람·복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복사사항

용도	
매수 · 분량	
신청내용	

20년 월일

신청인